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

계약은 수급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수급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의 계약이 가능하다

2. 이용기간

서비스 이용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의 사망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지 요구하는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3. 계약기간

서비스 이용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의 사망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지 요구하는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할 수 있다.

4.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5.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총부담금 중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에 청구한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차상위계층에게는 보험료 경감기준에 따라 각각 6%, 9%를 청구한다.
-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자는 모두 자원봉사자를 파견하여 돕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무급 봉사한다.

구 분		부담률	내 용
월이용한도	공단부담금	85%	서비스 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 중 85% 보험공단 지급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 85%, 개인부담금 15%
		6%,9%	의료급여수급자, 감경대상자
		0%	기초생활수급자 면제

6.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1). 서비스 제공자 의무

- 가. 수급자의 쾌적한 주거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 나.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한다.
- 다. 표준 수발 서비스를 성실히 제공한다.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 가. 월 이용료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 나. 보호자 인적 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한다.
 - 다.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라.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3). 신원 인수인의 권리: 수급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4). 이용자의 책임 이행 :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수급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 가. 기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 나.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 다.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한다.

7. 계약의 해제

- 1). 센터에 서비스를 위한 거짓 정보를 한 대상자는 계약 해제한다.
- 2). 이용자가 사망하였을 때 계약 해제한다.
- 3).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됐을 때 계약 해제한다.
- 4).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계약 해제한다.
-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 제공자에게 막대한 지장을 줄 때 계약 해제한다.